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

발의자: 김근한·장미경 의원(2인)

찬성자: 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
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7인)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인상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수당 인상 (안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부서검토: 복지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

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 ③ (생략)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수당 지급 대상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해당자 ○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15만원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국가보훈 관계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해당자가 포함되기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헌자를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10만원”을 “1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으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내역: 1,900명 × 150,000원 × 12개월 = 3,420,000,000원 (연간)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출 발생
- 안 제8조제3항: 보훈예우수당의 인상 조정에 따른 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1,839명에서 1,900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 보훈예우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인상할 경우 2030년까지 17,1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출	보훈예우수당	3,420,000	3,420,000	3,420,000	3,420,000	3,420,000	17,100,000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3,420,000	3,420,000	3,420,000	3,420,000	3,420,000	17,100,000
민간						
기타						
합계	3,420,000	3,420,000	3,420,000	3,420,000	3,420,000	17,10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의 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복지정책과 보훈선양팀 김기영(☎054-480-51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 본 개정안은 아래 산출내역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2025. 8월 현재 보훈예우수당 지급인원 : 1,839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58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3명

※ 보훈예우수당 산출내역(추가비용)

- 2026년: 1,900명 × 월 150,000원 × 12개월 = 3,420,000,000원
- 2027년: 1,900명 × 월 150,000원 × 12개월 = 3,420,000,000원
- 2028년: 1,900명 × 월 150,000원 × 12개월 = 3,420,000,000원
- 2029년: 1,900명 × 월 150,000원 × 12개월 = 3,420,000,000원
- 2030년: 1,900명 × 월 150,000원 × 12개월 = 3,420,000,000원